

의안번호	2215944
의 퇴 인	김태호의원
회 답 일	2026. 5. 21.
추계번호	26B017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정보보호 공시)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3조(정보보호 공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의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고 있다.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의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시설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참고자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개요’ 참조

□ 현행법²⁾은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기관은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인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 한국경영인증원(2026년 신규 지정)임

[표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수수료 수입·감면 현황: 2025년

(단위: 건, 백만원)

인증·심사 기관	인증건수	수수료 수입액	수수료 감면액
한국인터넷진흥원	4	66	—
금융보안원	132	2,180	12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405	4,022	8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28	1,388	13
개인정보보호협회	171	1,657	9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	246	2,571	14
계	1,086	11,884	238

주: 인증·심사기관 중 한국경영인증원은 2026년 신규 지정되어 2025년 실적이 없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안전한 인터넷이용을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같은 법 제391조에 따라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결과 등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기관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수지차 보전방식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수지차 보전기관)³⁾임

[표 2]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수수료 수입·감면 현황: 2023~2025년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인증건수	수수료 수입액	수수료 감면액(건)
2023년	6	55	—
2024년	4	78	9
2025년	4	66	—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정안은 정보보호현황을 공개한 자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지차 보전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수입 감소 등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기관 중 민간기관인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 한국경영인증원’에 대하여는 국가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감면액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청자 중 정보보호현황을 공개한 벤처기업의 수 및 해당 기업의 인증 수수료 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이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3) 수지차 보전방식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수지차 보전기관)은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기관의 지출 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함(국회예산정책처,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2025. 5., p.168.)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 목적

-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기관)이 스스로 수립·운영 중인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

□ 주요 내용

- 의무대상 : 주요 ISP, IDC,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 등(정보통신망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구분	상세내용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ISP)	■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집적통신시설 사업자(IDC)	■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정보 제공자 /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①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며,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③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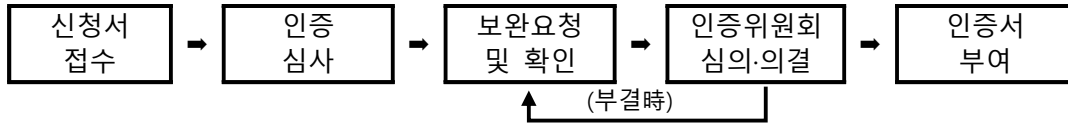
- 인증기준 : ISMS(80개), ISMS-P(101개)

구분	ISMS	ISMS-P	인증기준(101)	ISMS	ISMS-P
인증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	0	0
인증 마크			보호대책 요구사항(64)	(80)	(101)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의 인증기준(80개)에 개인정보보호 항목(21개)을 추가(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

□ 인증 절차 및 방법

- 서면 및 현장 심사의 방법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서 부여



□ 인증·심사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 한국경영인증원(2026년 신규 지정)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및 수수료 수입·감면 현황(2025년 기준)

(단위: 건, 백만원)

인증·심사 기관	인증건수	수수료 수입액	수수료 감면액
한국인터넷진흥원	4	66	—
금융보안원	132	2,180	12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405	4,022	8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128	1,388	13
개인정보보호협회	171	1,657	9
차세대정보보안인증원	246	2,571	14
계	1,086	11,884	238

주: 인증·심사기관 중 한국경영인증원은 2026년 신규 지정되어 2025년 실적이 없음